

삼척시 공고 제2019-8호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삼 척 시 장

1. 2019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② 청구 서명인수
59,066	7,384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삼척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청구 서명인수

- ▶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2. 2019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① 삼척시장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읍면동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15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59,064	8,860 이 상	4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591	30	591	10,356	1,554
			원덕읍	591			4,919	738
			근덕면	591			5,025	754
			하장면	193			1,283	193
			노곡면	106			703	106
			미로면	270			1,794	270
			가곡면	103			685	103
			신기면	95			630	95
			남양동	591			7,237	1,086
			성내동	591			7,181	1,078
			교 동	591			11,406	1,711
			정라동	591			7,845	1,177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 1/3 이상(4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2. 삼척시의원

선거구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읍면동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20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가” 선거구	32,650	6,530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327	17	327	10,356	2,072
				하장면	257			1,283	257
				미로면	327			1,794	359
				신기면	126			630	126
				성내동	327			7,181	1,437
				교 동	327			11,406	2,282
“나” 선거구	26,414	5,283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원덕읍	265	14	265	4,919	984
				근덕면	265			5,025	1,005
				노곡면	141			703	141
				가곡면	137			685	137
				남양동	265			7,237	1,448
				정라동	265			7,845	1,569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 1/3 이상(2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